

특집/한·미합동수의임상세미나

1. 수의과학의 세계화

배 상 호

서 론

-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 돌입
 -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자국의 경제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경제전쟁 시대 개막
- '95년부터 세계화를 국정목표의 최우선으로 선언
 - <김대통령, '94. 11. 17 시드니 구상발표> '95년을 세계화의 원년 선언
 - 人類화, 一流화, 一切화, 合理화, 韓國화 추구
- 수의분야의 세계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음.
 - 수의행정 및 검사조직의 선진화
 - 미국 FDA에 상응한 한국형 FSIS 설립, 중앙의 행정조직 정비
 - 소득수준 1만\$시대에 맞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요구
 - 축산물 안전성 확보, 병원미생물 오염방지
 - ...HACCP제도 도입
 - WTO/SPS 협정에 의한 국내 축산물위생감시 강화
 - 외국 축산물과 동등한 무차별적인 국내검사 실시
 - 수입지역다변화 및 수입물량증가에 대비한 검역강화
 - 검역인력, 시설, 장비의 현대화
 - 가축방역 철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 질병 피해액이 축산 총생산(95.5조 3천억원)의 20% 이상 점유

당면한 가축위생 주요업무

- 가. 축산분뇨처리 기술보급 및 자원화 추진
 - 분뇨의 자원화로 축산업 생산비 절감 유도
 - 가축배설물의 토양환원 → 지력증진 및 생태계 보존
 - 축산환경 위생관리 강화
- 나. 축산물위생수준 향상대책 추진
 - 위생적인 사양관리, 동물약품 미첨가 후기사료 사용, 동물약품 안전사용규칙 준수로 축산물내 유해물질 잔류방지 추진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대양축가 지도·홍보 강화
 - 종돈장·종계장의 정부품질인증제(위생등급제) 실시('96. 7월)
 - 잔류물질검사 강화
 - 수입육류와 동등한 수준의 국내 축산물검사 강화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인력·장비보강
 - 잔류물질조사 프로그램 개발·시행
 - 축산물작업장의 위생수준 향상
 - HACCP제도 운용 및 작업장별 위생등급제 도입 검토
 - 우유위생관리 강화
 - 원유검사 제도 개선, 체세포수 유대지급 반영
 - 절박도살제도 개선 방안검토 추진
 - 수의사별칙강화, 도축장지정, 교육, 홍보강화등
- 다. 가축방역 종합대책 추진
 -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 우결핵·브루셀라병·탄저·돼지콜레라·오제스키병·뉴캐슬병 및 광견병 등

* 농림부 가축위생과

가축위생업무량 추이

구분	'80(A)	'90	'95(B)	비고(B/A)
도축검사(천두)	2,542	9,157	10,958	430.7%
○ 소	537	554	780	145.2%
○ 돼지	2,005	8,603	10,178	507.6%
원유검사(천톤)	452	1,752	1,999	442.2%
가축방역(천두수)	6,624	5,187	3,216	146.1%
○ 예방주사	5,308	4,559	7,191	135.5%
○ 검진	316	628	1,025	324.4%
검역	1,580	3,484	4,390	277.8%
○ 동물(천수)	1,318	2,725	3,461	262.6%
○ 축산물(천톤)	262	759	929	354.6%

- 가축전염병 발생신고 체제 확립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방안 검토
- 국내방역과 국제방역과의 연계, 도축장출하 가축의 질병검사 강화로 질병의 조기 검색 →신속한 방역조치 추진
- 어병관리 대책 추진
-OIE 어병연구 및 행정관리 조화, 어패류검사 강화

라. 동물 및 축산물검역기능강화 추진

- 검역제도·규정의 국제화 기준으로 정비
- 동물 및 축산물의 질병검사, 잔류물질검사 강화
-검역시설·인력·장비의 현대화
- 수의관(검역관) 해외주재로 최신 해외정보 신속입수 및 대처
- 해외가축전염병 진단 센터 설치 운영
-’96년 완공(수의과학연구소 구내):57억 소요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연구·예방약 개발·비축 등 검토

마. 동물용의약품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 철저유도

- 축산물내 잔류방지 대책 추진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고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수칙 사료 첨가제사용기준 고시 개정등
-약효재평가 및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방안 추진

바.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로 일원화 추진

- 가축의 사육·도축·가공·운송·유통·판매의 전과정을 농림부로 일원화 →생산자 및 소비자 동시보호
- 축산물의 수급·가격·위생관리에 대한 권한·책임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
- ※ ’96. 4. 24 행태위 실무협의 결과·농림부로 일원화토록 의결

가. 사업목표

’96 가축위생정책 방향

- 가축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방지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기여
-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
- 동물·축산물의 검역기능 강화로 세계무역 개방화에 대비

나. 주요 중점 추진시책

- 환경보전형 축산업의 지속적 추진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
-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추진
-축산물의 위생도축시설 확충

다. '96 예산내역

사 업 명	95	96	97 요구	비 고
축산분노자원화	109,455	118,230	130,000	
축산물위생사업	20,403	6,884	5,900	
가 축 방 역	6,689	10,123	47,235	
동물검역기능강화	5,003	6,580	7,098	
계	141,550	140,817	190,233	

- 식육내 유해잔류물질검사 사업확대
- 원유의 위생검사 강화
- 동물·축산물 검역기능 강화사업 추진
 -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대책
 - 수출입 육류의 잔류물질검사 확대
- 가축방역검사 강화

부응한 수의과학행정·연구조직의 활성화와 강화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

다. 발전대책

- 수의행정조직 정비
 - 중 앙:농림부 수의국(가축위생과, 동물방역과, 수의과)신설
 - 연구소:중앙수의검사원(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 통합)
 - 지 방:지역(수도권·영남·호남·중부권)검사소 설치
 -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 가축의 사육·도축·가공·유통·소비와 축산물 생산·수급·가격관리 일원화 →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 수의사의 자질향상 방안 추진
 - 수의과대학 교육연한 연장(현행 4년 → 6년)
- ※ '96. 5. 20:입법예고(교육부 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수의행정 및 연구조직등의 발전 방안

가. 수의행정 및 연구조직의 특성

- 신속한 질병검역 및 보고체제
- 정확한 병성감정 및 진단
- 철저한 이동통제 및 방역지대 설정 운영
- 과감한 검색, 도태 및 긴급방역 조치
- 실험실 정밀위생검사 업무의 정확도 제고
- 첨단수의과학진단기술의 국제화 교류

나. 조직 및 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 UR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선결과제임.
- WTO 출범에 따라 동물·축산물의 교역량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동물검역 및 축산물의 정밀위생검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WTO/SPS 협정에 의한 내·외국 동등성 및 무차별 원칙에 따라 국내 동물·축산물검사에 대하여 국제 기준과의 조화와 투명성 확보가 이행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관리청"설치에 대응하여 축산물위생검사 체제의 조직의 정비·보강이 시급함.
- 따라서 가축위생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제화에

결 론

우리나라 농업은 우리겨레를 지키는 생명산업이며 식량안보차원에서 수호되어야 할 것이며 그중 축산업은 농가소득면에서 주선했던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축산업의 성패와 경쟁력 확보는 위생관리에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엄격한 위생관리를 위하여는 선진세계수준의 수의행정조직체제 확립과 제도 등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만불, 세계 12번째의 교역국으로 성장하여 세계 일류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는 하나 수의계의 현실은 상대적으로 매우 뒤져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수의과학의 세계화를 위하여는 우리의 시야를 선진세계로 돌려 전문지식으로서의 일류화를 위한 배가의 연구·노력이 요구됨은 물론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수의사 모두의 힘과 의지가 모아져야만 한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살려 세계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외부적으로 주어질 질서에 개방하나 우리 국내의 법률과 제도를 국제사회에 맞추어 나가는 국제화 추진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수의관련 민원회신내용 요약

- 1. 「발톱삭제」행위가 수의사의 진료행위 해당여부
 - 부상 및 부재병 치료등을 위해 수의사 지도·감독 하에 삭제하여야 함.
 - 수의사이외의 자의 「발톱삭제」영업행위는 위법임.
- 2. 동물병원에서 「동물약품판매」간판게시 적법여부
 - 동물병원 간판크기의 간판게시 불가(판매업소와 구분)
 - 동물병원이 주업이고 동물약품판매는 부업차원임.
- 3. 해외에서 박사학위취득인정 범위
 - 박사학위 수여가능 대학(미국은 대학교수협의회에서 인정)에서 학위취득 → 귀국후 6개월이내에 학위논문 첨부 교육부에 신고
 -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에서 심의
- 4. 동물약품 도·소매업 구분
 - 동물약품등 취급규칙에 명문규정 없음
 - 동물약품유통의 특수성(보건복지부는 명문화)
- 5. 개도축업 허용용의는?
 - 축산물위생처리법상 개는 수축의 대상이 아님
 - 식품위생법 소관사항임, 국제적 비난, 개도살관습으로 범법자 양산우려 → 동물애호정신 함양
- 6. 동물약품도매상 자산기준
 - 개소별로 별도 자본금(법인:1억, 개인:2억)필요

-서울에서 3억원으로 도매상 개설한자가 경기도에 도매상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별도로 2억원이 추가로 필요함.

- 7. 「유방염 고름유유」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방송에 출연한 수의사조치사항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발언으로 사회적물물야기 → 업중경고 조치
- 8. 외국의 수의사가 국내시험응시 가능한지 여부
 - 수의사법 제9조에 의거 응시 가능
- 9. 주택단지에서의 동물병원개설 가능여부
 -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지역건을 감안하여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단지에 동물병원개설가능(건교부: '96. 3. 28)
- 10. 수의사면허 대여 행정조치
 - 경북경찰청장으로 부터 통보 → 1년간 면허정지
- 11. 초음파진단기로 수정사가 임신감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신감정 업무가 진료행위에 해당 → 불가
- 12. 동물판매소(애견센터)에서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투약행위의 적법여부
 - 수의사법 제10조 규정위반
 - 수의사 이외의자의 진료행위에 해당
- 13. 수의사가 아닌 축산전문지도사의 유혈 또는 무혈 거세행위의 적법여부
 - 거세기술후 봉합·소독 및 세균오염방지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수의사 이외의자가 행할 수 없음.
 - 다만,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철저한 교육과 수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술할 수 있음.
- 14. 인공수정사의 「임신감정행위」적법여부
 - 임신감정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가
 - 다만, 인공수정사 자신이 실시한 인공수정수태여부나 재수정을 위한 임신사실여부만을 확인하는 임신감정은 가능